KOSHA GUIDE H - 25 - 2011

건물 내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2011.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오정룡, 유민
- 제·개정 경과
- 2011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Caring for cleaners, HSE, 2003
- Working Saferand Easier for janitors, custodians and housekeepers,
 Cal/OSHA Consultation Service, 2005
- A Clean Sweep: Safe Work Practices for Custodians, BCSSA, 2006
- KOSHA CODE H-31-2003,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KOSHA CODE H-39-2005,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지침,
- KOSHA CODE H-43-2007,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 H-9-201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 해의 예방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1년 12월 26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H - 25 - 2011

건물 내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 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 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직업적이며 반복적으로 건물 내 청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인 건물 내 청소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나) "청소작업"이라 함은 청소도구 운반, 벽면 및 천정의 먼지제거, 손걸레 청소 바닥 및 계단 쓸기, 대걸레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바닥 광택, 쓰레 기 수거 기타 청소를 위한 가구나 장비의 이동 등 수작업 및 기계사용을 포함하는 작업을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물 내 청소원의 유해요인

- 4.1 근골격계부담 요인
 - (1) 과도한 힘의 사용
 - (가) 종이,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할 때
 - (나) 양동이 등 용기에 물을 채우거나 용기를 들고 이동할 때
 - (다) 대걸레, 손걸레 등을 짜거나 밀고 당기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
 - (2) 반복동작 또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 (가) 빗자루, 대걸레(마대)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쓸거나 닦을 때
 - (나)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은 대걸레(마대) 및 롤러를 사용하여 벽면을 닦을 때
 - (다) 천정의 먼지제거 작업 시 반복적으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할 때
 - (라) 진공청소기 등의 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
 - (3) 기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 (가) 빗자루, 대걸레 등을 사용할 때 날카로운 손잡이 모서리로 인한 접촉스트 레스
 - (나) 전동광택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때 손·팔 부위 진동
- 4.2 뇌심혈관질환/직무스트레스유발요인
 - (1) 잘못된 생활습관 및 기초질환 관리 부족

H - 25 - 2011

(2)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요구 및 직무자율, 동료와의 갈등, 직무불안정 등 직무스트레스요인

4.3 화학물질 취급 등

- (1) 청소 시 사용되는 각종 세정제, 세척제 등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하여 근로 자가 유해성을 주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수행함으로서 취급물질에 의한 눈·피부 자극, 중독
- (2) 동물의 대변, 음식물 쓰레기, 페인트 통 등을 취급할 때의 피부 접촉과 비위생적인 피부관리로 인한 피부질환 및 감염성 질환

4.4 실내 오염물질

(1) 사무실 등 실내 청소 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분진(먼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물질에 노출

4.5 사고성 재해요인

- (1) 바닥에 높이차 및 경사가 있거나 요철 등이 존재할 때, 청소도구 및 자재 등의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통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미끄러짐/넘 어짐
- (2) 세정제, 세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거나 물기로 젖어 있을 때 미끄러짐/넘어짐
- (3)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 시 날카로운 물체(유리, 나무 조각 등)의 접촉과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절단·베임·찔림

5. 유해요인 예방대책(개선방안)

5.1 근골격계질환 예방

H - 25 - 2011

5.1.1 원자재 보관

- (1) 청소작업 시 필요한 세정제, 세척제 등은 선반 등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반출하여 사용한다.
- (2) 무거운 청소도구, 세제 등을 보관할 때에는 바닥 높이를 피하고, 무릎에서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한다.

5.1.2 인력작업(물품취급)

- (1) 가구, 쓰레기 봉투 등의 중량물을 치우거나 옮기는 작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거나 수레, 이동대차 등의 보조도구 사용,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적용한다.
- (2) 물품을 들거나 내릴 때는 몸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 (3) 청소도구, 쓰레기 수거 용기 등은 바퀴가 달린 전용 운반도구를 사용하여 빈번하게 들거나 운반하는 동작을 제거한다.
- (4) 대용량의 세척제 용기는 작은 용량의 용기로 교체하거나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용기 재질의 제품을 선택한다.
- (5) 음식물, 일반쓰레기 등 중량물 운반 시에는 운반동작, 이동횟수, 취급높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취급토록 하고, 양손으로 운반 시양쪽의 무게를 비슷하게 분산시키도록 한다.

5.1.3 작업장 디자인

- (1) 복도, 통로 및 계단은 정리정돈과 명확한 구획을 설정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편평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 (2) 통로, 계단의 조도는 어두운 밤에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밝게 하여 시력저하, 피로감 완화, 사고예방 등의 효과를 얻도록 한다.

H - 25 - 2011

- (3) 출입구, 통로, 계단은 양쪽 방향 모두 이동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 (4) 쓰레기 봉투, 청소도구 등의 무거운 물품을 빈번하게 이동하거나 운반하여 야 하는 곳은 계단 대신에 미끄럽지 않은 경사로를 설치한다.

5.1.4 청소도구(보조도구)

(1) 빗자루, 대걸레(마대) 등의 손잡이는 작업 시 손목이 빈번하게 꺾이지 않도록 <그림 1>을 참고하여 꺾인 손잡이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림 1> 손잡이가 꺾인 제품 예시

(2) 무거운 대걸레(마대) 등은 <그림 2>와 같이 중간에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손, 팔 부위의 근육부담을 줄여준다.



<그림 2> 보조 손잡이 설치 예시

(3) 쓰레기 봉투가 담긴 통은 들어올리는 작업 시 흡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통의 하단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풍구(Vent)를 만들거나 통의 안쪽에 공기 배기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그림 3> 통풍구 및 공기 배기구 설치 모습

- (4) 무릎을 굽히거나 앉은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무릎보호대 및 패드를 부착하고 작업한다.
- (5) 플라스틱 통, 용기 등의 손잡이는 두께가 2.5~3.8cm 가 되도록 하며, 미끄럽지 않고 완충성이 있는 소재의 손잡이를 사용한다.
- (6) 면적이 넓은 장소를 청소 및 광택 시에는 대걸레 대신 전동식 청소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신체에 걸리는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 (7) 전동광택기 사용 시 신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잡이 부분 에 패드를 부착하거나 장시간 사용 시 방진장갑을 착용한다.
- (8) 높은 곳을 청소할 때에는 과도한 상지 뻗힘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거나 손잡이가 긴 작업도구를 이용한다.
- (9) 샤워실, 화장실 등의 청소 시 사용하는 세탁솔, 수세미 등은 손잡이가 꺾여 있거나 머리 부분이 회전 가능한 도구로 교체한다.
- (10) 대걸레를 짤 때 허리굽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잡이가 긴 탈수기를 사용하며, 개구부가 넓고 청소전 물과 청소 후 물이 분리되어 담길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 (11) 전동광택기 사용 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동시 용이하도록 계단 이동용 바퀴를 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 (12) 계단, 건물의 창틀 등 협소한 공간을 청소할 때에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장비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낭형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H - 25 - 2011

(13) 아파트나 건물 계단의 논슬립 부위 청소 및 광택시 수세미, 걸레 등의 수 작업을 지양하고 자동 논슬립 청소/광택기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5.1.5 의학적 및 관리적 예방 대책

(1)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및 유발 유해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물품 취급 및 운반 등에 관한 유해성주지 교육을 실시한다.

(2) 순환근무

- (가) 관리자는 가능한 손걸레 청소, 바닥 및 계단 쓸기, 대걸레 청소 등과 같은 다른 업무를 순환시켜 준다.
- (나) 관리자는 작업계획 수립시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을 유발하는 작업이 반복 되지 않도록 작업물량 및 작업시간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3)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 GUIDE H-9-2011)」을 참조한다.
- (4) 필요한 경우, 전사적인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하여 경영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인간공학적 분석, 유해요인에 관한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참조한다.
- (5)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일 경우 자주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한다.
- (6) 건물 내 청소원이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H - 25 - 2011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7) 휴식 및 짧은 작업정지 시간제공
 - (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작업자는 피곤을 느끼거나 근육에 통증이 올 때 휴식을 취하거나 잠깐 동안 작업을 멈추도록 한다.
 - (다) 작업자는 $10\sim15$ 초 간의 짧은 작업정지 시간을 자주 갖고 그동안에 자세를 바꾸고 간단히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8)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복귀를 위한 의학적 관리를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KOSHA CODE H-43-2007)」을 참조한다.

5.2 뇌심혈관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

- (1)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 관리하기위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KOSHA GUIDE H-1-2010)」을 참조한다.
- (2) 청소작업 종사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를 실시하며, 일반건강진 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근무상 조치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뇌심혈 관질환을 예방한다. 이 경우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KOSHA GUIDE H-4-2010)」을 참조한다.
- (3)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예방의 중요성, 발병위험도 평가의 의미, 질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H - 25 - 2011

- (4)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KOSHA CODE H-42-2006)」 및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KOSHA GUIDE H-39-2011)」,「건물청소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KOSHA GUIDE H-28-2011)」등을 참조한다.
- (5) 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6)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7)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 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5.3 피부질환 및 감염성질환 예방

5.3.1 조직적 관리

- (1) 사용하는 세정제, 세척제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취급근로자에게 취급 시 유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한다.
- (2) 음식물 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취급한 후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게 하고 음료수나 물 섭취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염성질환 예방 교육 을 실시한다.
- (3) 자극적이지 않은 세정제, 깨끗한 수건, 작업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피부보호 크림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4) 개인 락커, 샤워실,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 등 적절한 개인위생시설을 설치하다.

H - 25 - 2011

5.3.2 개인적 관리

- (1) 쓰레기 분리 수거 시 못 등의 날카로운 물체는 따로 취급하고, 안전화나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2) 식사전, 음료수 섭취 전, 흡연 시, 화장실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한다.
- (3) 동물/사람의 대변이나 쓰레기 등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하게 자루에 넣어 따로 잘 포장하고, 장갑 등의 보호 장비 없이 해당 물질을 만지거나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5.4 호흡기질환 예방

- (1) 사무실 등의 실내를 청소할 때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습식 등 실내분진발 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 (2)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그밖에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KOSHA CODE H-6-2003)」을 참조한다.

5.5 사고성 재해 예방

- (1) 청소도구 운반, 대걸레 청소 등 작업 수행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Non-slip)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2) 청소작업 시 작업경로의 주변에 있는 물기, 기름 등 이물질에 의한 미끄러 짐/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청소를 진행한다.
- (3) 신발을 구겨 신거나 바지를 내려입는 등 단정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작업수행 시 미끄러짐/넘어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

H - 25 - 2011

한다.

- (4) 관리자는 건물 및 사무실 등의 지면,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수시로 보수하고, 불필요한 경사를 제거하여 미끄러짐/넘어짐 재해 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5) 유리나 나무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 접촉으로 인한 절단·베임·찔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갑, 안전장화, 베임 방지 바지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6) 쓰레기 수거 및 분류작업 시 날카로운 물건 등은 집게를 이용하고 다른 물건과 구분하여 수집한다.

6.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점검사항

건물 내 청소작업의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의 개선, 작업도구의 개선, 관리적 개선시의 점검사항은 <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KOSHA GUIDE H - 25 - 2011

<별표 1> 건물 내 청소직종의 대표적인 작업별 유해요인

작 업 명	작 업 내 용	유 해 요 인	비고
1. 청소도구 운반	-청소를 위한 도구, 세제를 수레 등에 적 재 후 운반작업	무리한 힘(중량물)	어깨, 허리
		부적절한 작업자세	어깨, 허리, 다리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미끄러짐/넘어짐	다리, 허리
2. 벽면 및 천정 먼지제거	-건물 내 벽면/천정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목, 어깨, 팔
	먼지를 빗자루 또는 전용도구를 사용하여 제거 작업	반복동작	목, 어깨, 팔
		정적인 자세	목, 어깨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벽면, 바닥, 계단 난 간 등을 손걸레를 사 용하여 청소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목, 어깨, 팔, 허리
3. 손걸레 청소		반복동작	손/손목, 어깨, 팔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화학물질(세제) 노출	눈, 피부
4. 바닥 및 계단 쓸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부적절한 작업자세	손/손목, 어깨, 팔, 허리
	사용하여 바닥 먼지 를 쓸어내거나 담는 작업	반복동작	손/손목, 팔, 어깨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미끄러짐/넘어짐	다리, 허리
	-대걸레를 물, 세제에 적셔 바닥, 계단 등 을 닦는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손/손목, 어깨, 팔, 허리
		반복동작	손/손목, 팔, 어깨
5. 대걸레 청소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화학물질(세제) 노출	눈, 피부
		미끄러짐/넘어짐	다리, 허리
6. 진공청소기 사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	부적절한 작업자세	손/손목, 팔, 어깨
	여 실내 바닥 등을	반복동작	손/손목, 팔, 어깨
	청소하는 작업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7. 바닥 광택	-전동광택기 등을 사	반복동작	손/손목, 팔, 어깨
	용하여 바닥에 광택	접촉스트레스	손/손목
	을 내는 작업	진동	손/손목, 팔, 어깨
8. 쓰레기 수거	-청소도구 정리 및 쓰	무리한 힘(중량물)	어깨, 허리
		부적절한 작업자세	어깨, 허리, 다리
	레기 분리수거 작업	미끄러짐/넘어짐	다리, 허리
		베임/찔림	손/손목, 무릎, 다리

H - 25 - 2011

<별표 2> 건물 내 청소원의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점검사항

· 목	예	아니오
근골격계질환	•	-
②작업환경 개선		
1. 적절하며 조절 가능한 조명장치는 있는가?		
2. 청소장비와 도구를 위한 적절한 보관시설이 있는가?		
3. 청소장비 주변에 사용하기 편한 세척시설이 있는가?		
4. 보관시설을 포함한 근무영역에서의 환기가 가능한가?		
5. 바닥은 고르고 평평한가?		
6. 날카로운 모서리 등 다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가?		
7. 온도와 습도는 적당한가?		
④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개선		
1. 가슴 이상의 높이에서 행해지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2.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3. 팔을 뻗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4. 상체를 비틀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5.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6. 손목을 구부리거나 좌우로 비트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7. 손에 갑작스런 충격 또는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가?		
©작업도구 개선		_
1. 청소작업시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조도구를 선택하였는가?		
2.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반구를 도입하였는가?		
3. 근로자의 신체 조건에 맞도록 도구를 개선하였는가?		
4. 바닥 및 문턱 등의 작업환경에 적합하도록 도구를 개선하였는가?		
5. 작업인력/작업량 대비 충분한 숫자의 도구를 도입하였는가?		
6. 무거운 설비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는가?		
7. 팔을 뻗는 등 높은 부위의 청소를 위해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가?		
라라리적 개선	_	
1. 청소작업시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가?		
2. 작업시작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3.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4. 청소도구 및 재료를 수시로 정리하여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5.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고 틈틈이 짧은 휴식을 갖는가?		
6.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신발을 꺾어 신고 작업하지는 않는가?		
7. 사용하는 세제, 세척제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알고 있는가?		

H - 25 - 2011

항 목	예	아니오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
1.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리하는가?		
2.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가?		
4.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5.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는가?		
6.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시간과 시설이 있는가?		
7. 근로자와 사업주가 뇌심 및 스트레스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피부질환 및 감염성질환		•
1. 피부질환 및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2. 세정제, 세척제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있는가?		
3.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는 취급시 유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의 교육을 받는가?		
4. 피부질환 및 감염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보호구 및 피부 보호용품(수건, 크림 등) 등을 착용하는가?		
6. 개인 락커, 샤워실 등 적절한 개인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호흡기질환		
1. 호흡기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청소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분진발생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청소하는가?		
3.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가?		
4. 작업근로자는 분진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는가?		